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곤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